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 주요내용

가.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 조정(안제5조제1항)

- 1) 「군 전직 및 위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라 5년 복무 후 전역하는 중기복무자의 경우에도 전역예정일 기준 3개월간 전직 지원교육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5년차 전역지원서를 접수, 각군의 전역심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전역승인 하달이 불가피하게 지연됨. 따라서 3월 1일에 임관하는 사관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역하는 해의 2월 28일에 전역 희망시에는 전직지원 기간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 2) 이에,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원만한 전역 준비와 합리적인 전역통제를 하고자 함.

나. 사이버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제15조제1항제3호)

- 1) '11년부터 정보통신병과의 정보통신장교와 전산장교의 특기를 통합하여 인사관리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산 분야가 계속 명시되어 있음.
- 2) 또한, 현대전에서 사이버 분야는 필수적인 전쟁수행 역량으로서 군은 '16년부터 사이버 전문인력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19년부터 전문인력 및 특기로서 인사관리 중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 3) 이에, 전문인력 직위에서 전산 분야를 삭제하고 사이버 분야를 신설함.

다. 특별진급 요건 및 대상 구체화(안제43조)

- 1) 「군인사법」 제30조 개정('25. 3. 18.) 및 시행('25. 9. 19.)에 따라 전·평시를 막론하고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특별진급이 가능함.
- 2) 따라서 현행작전, 대민지원 뿐만 아니라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별진급 대상자를 해외파병(파견) 및 작전 현장 지휘임무를 수행하는 대령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병까지 1계급 진급가능하도록 적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년도 12월 31일”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산”을 “사이버”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을 “(특별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을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등병·일등병 및 이등병: 1계급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특별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선발한다.

제4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유도 작전 등 현행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

위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

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4.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서 제4호에 의한 특별진급 대상자는 대령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병으로 한다.

④ 특별진급은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와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해의 <u>전년도 12월 31일</u> 까지 전역지원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① ----- ----- ----- ----- ----- ----- ----- ----- <u>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일</u>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전문인력 직위)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15조(전문인력 직위) ①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전산</u>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		3. <u>사이버</u> -----		

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
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
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 목
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
라 한다)

가.·나. (생략)

4.·5. (생략)

②·③ (생략)

제43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
공자 등의 진급) ① 법 제30조
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
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
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서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상등병·1등병 및 2등병: 1계
급

② 제1항에 규정된 “전투,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
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특별진급) ①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상등병·일등병 및 이등병: 1
계급

②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특
별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방부장
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
을 선발한다.

1.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

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유도
작전 등 현행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인명
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4.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
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서 제4호에 의
한 특별진급 대상자는 대령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
관후보생, 병으로 한다.

④ 특별진급은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121